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2082호

도시관리계획(서초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위한 열람 공고

- 서초구 서초동 1657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-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88호로 결정 고시되고, 제2017-182호로 결정(변경) 고시 된 「서초로 지구단위 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0년 7월 23일
서울특별시

I. 열람기간 : 2020. 07. 24 ~ 2020. 08. 06.(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)

II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(☎02-2133-6297)

I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역~강남역	540,698.1	-	540,698.1	서울시고시 제53호 ('87. 2. 3)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생략)

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가. 교통시설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■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대로	2	48	30	보조 간선 도로	3,500	잠원동 (서초동 1672-10)	서초동 (서초동 1656-6)	일반 도로	건고 제8호 (1976.1.21)	우면로

나. 기타시설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. 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획지 결정(변경)조서

■ 최대개발규모(변경없음)

■ 공동개발(변경)

구분		지번	면적 (㎡)	계획내용		비고
				기정	변경	
GC -9	공동 개발	서초동 1657-1, -2, -8~10	1,745.0	1657-1, -2/-8~10 각각 공동개발 지정 1657-1, -2/-8~10 공동개발 권장	1657-1,2/1657-8~10 공동개발 권장 해제	-
					1657-1, -2 각각 단독개발	
					1657-8~10 공동개발 지정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-	필지 1657-1, -2번지와 1657-8~10번지 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여 1657-1, -2번지 단독개발	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청년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함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가. 건축물의 용도 결정(변경)조서

■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		기정	변경	비고
용도	지정 용도	(a)	-	공동주택(주거복합) ^{주1)}	1657-2 에 한함
	권장 용도	역세권 지역2	전층	-	
			지하층	판매시설 중 상점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(영화관, 비디오물 감상실·비디오물 소극장 제외)/전시장/집회장(예식장 제외)	

불허용도	전구역		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	좌동	
	간선부 A		숙박시설 중 여관 및 여인숙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운동시설 중 옥외노출골프관련시설,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고시원(유사시설 포함)		
	A-1	—	-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 시설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, 마권 전화 투표소, 관람장 -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격리병원 - 장례시설/숙박시설/위락시설/공장 -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	1657-2에 한함	

주1) 공동주택은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,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—	지정용도 신설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」을 준용하여 지정용도 계획 수립
	불허용도 변경	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 계획

나. 건축물의 밀도 결정(변경)조서

■ 결정조서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	기정	변경	
건폐율	60% 이하	60% 이하	서초동 1657-2에 한함
용적률	- 기준: 300% 이하 - 허용: 630% 이하	- 기본: 1,000% 이하 - 상한: 법정 이하	
높이	- 기준: 70m 이하 - 최고: 90m 이하	80m 이하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결정내용	결정사유
—	건폐율 : 60% 이하	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준용
	기본용적률 : 1,000% 이하	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따라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 변경
	80m 이하	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높이

■ 용적률 적용기준(의무사항) : 신설

구분		내용	공공기여 계획(안)	완화 내용	비고
공공 기여율	공공시설 등 설치·제공 비율	• 부지면적의 14%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	•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: 14.74%(53.24㎡)	기본 용적률 1,000% 적용	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
	건축물 용도 구분	• 10% 이상 ~ 20% 이하 (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) • 80% 이상 90% 이하	• 주거 : 비주거 = 87.52% : 12.48%		
주택 건설 비중	주택규모	• 공공임대주택 : 전용 45㎡ 이하 • 민간임대주택 : 전용 60㎡ 이하	• 공공임대주택* : 40A(30.30㎡), 40B(30.30㎡) 계획 • 민간임대주택 : 19A(15.87㎡), 19B(15.28㎡), 40A(30.30㎡) 계획		
건축물 형태	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	• 리모델링이 쉬운구조,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, 에너지 효율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, 공공 시설물 설치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	• 에너지효율 건축물, 친환경 건축물		
주민 공동 시설	커뮤니티 시설	•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시설 별도 설치 100세대 미만 : 100㎡ 이상 100세대 이상~300세대 미만 : 150㎡ 이상 300세대 이상 : 200㎡ 이상	• 커뮤니티 시설 154.96㎡ 계획		

*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완화 안은 전용면적임

※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준용

※ 인·허가 절차 수행과정에서 공공기여 계획(안) 변경 가능

다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한계선 등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1)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■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지정선	• 30m 이상의 간선도로변(서초로변) : 도로경계선에서 3m	-

④ 기타사항 관한 결정(변경)

1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가. 대지내공지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전면공지	• 건축지정선 3m :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	-

2.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.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
■ 결정조서(변경)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	기정	변경	
차량출입 불허구간 (규제)	서초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 출입 금지	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간선가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치	-

3.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(신설)

가. 공공기여 계획 : 신설

■ 결정조서(신설)

구분	공공기여율	공공기여 계획(안)	비고
공공임대주택	14% ^{주)} 이상 (50.57㎡ 이상)	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: 14.74%(53.24㎡)	서초동 1657-2에 한함

주) 「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3-2-1 준용

※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,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

■ 공공임대주택 제공면적 산정: 일반상업지역, 용도지역 변경 없음

(공공기여율 : 부지면적의 14%)

구분	구역면적	전체 연면적	주거 연면적	공공임대 전용면적	주거 전용면적	기부채납 내용	총 제공 면적
공공 임대 주택	1,000%	361.20㎡	4,138.21㎡	3,436.82㎡	303.00㎡	1,707.18㎡	공공임대 부속토지
		- 일반상업지역, 용도지역 변경 없음(기본용적률 1,000%) 공공기여량(㎡) =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지면적의 14% 이상 = 361.20㎡ × 14% = 50.57㎡ 이상 -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(전용) = 대지면적(㎡) × 주거시설비율 × 공공임대주택비율 = 361.20㎡ × 83.05% × 17.75% = 53.24㎡(14.74%) ≥ 50.57㎡					53.24㎡

IV. 관계도면 : 불임참조(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-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V. 관계서류 열람방법

-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(02-2133-6297)와 서초구청 6층 도시계획과 (02-2155-678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
-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임